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사망보험금 유동화특약

2. 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나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가. 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종료일과 특약의 소멸 중에 빠른 날까지(재신청 시에는 재신청일부터 재신청 이후 유동화 종료일과 특약의 소멸 중에 빠른 날까지로 합니다)

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나이

피보험자 나이 만 55세 이상

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2년 ~ 주계약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종국연령*까지의 잔여기간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시 보장기간 종료시점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최종 나이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대상 및 신청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주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에 부가하여 적용하며, 계약자는 주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1)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점에 주계약 사망보험금(기타유지보너스, 증액 보험금, 체증형 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시점에 보험사고 발생하였다면

지급되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기준)이 9억원 이하인 계약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4) 신청시점 피보험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5)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

가.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중 언제든지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종료한다.

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중지 신청일 또는 종료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대상 및 신청」을 적용한다.

5. 기 타

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 (1)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유동화를 재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 「2. 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나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연단위)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점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재신청을 하는 경우, ‘재신청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총액’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재신청시점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 지급 방법

- (1)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으로 하여 이 특약의 매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한다.
- (2)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되어 유동화된 부분은 매월의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주계약에서 정하는 예정이율 또는 적용이율로 부리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의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 : 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년 ‘최초 유동화 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월,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다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유동화금액을 지급한 날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월 ‘최초 유동화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후의 처리

- (1)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된다.
- (2)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동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계약 보험료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되는 제도 및 옵션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이 완료되거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
- (3)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중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종료되며 이 특약은 소멸된다.

1)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유동화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유동화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유동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던 중 특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계약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라.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장래 유동화 종료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한다.